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금구중학교 특수학급 교육 환경개선공사

□ 개 찰 일 시: 2026. 7. 14.(화) 11:00

□ 수 요 기 관: 금구중학교

이 공고문은 금구중학교가 집행하는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금구중학교 행정실 (주무관 정우진 062-960-0103)
- 부패·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12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 사항]

-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금구중학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산업 기본법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금구중학교 특수학급 교육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센터 운영 안내]

▷ 홈페이지: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구중학교 특수학급 교육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금구중학교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8.(수) 16:00부터 2026. 7. 14.(화) 10:00까지**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7.14.(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37,500,000	34,090,909	3,409,091	0	0	37,500,000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0	0	0	0	796,343	0	0	796,343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보수보증금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같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금구중학교 행정실 (☎062-960-0103)**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7.8.(수) 16:00부터 2026.7.14.(화) 10:00까지
-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견적 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고장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7.14.(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천(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 【1.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전 서약서 제출)
- 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1)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 「정보통신공사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 가. 본 입찰에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차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기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알림]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준수 요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행정마당 - 입찰정보 - 입찰정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금구중학교 행정실(☎062-960-01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보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천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2026년 7월 8일

금구중학교장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 ◆ **전남광주통합특설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설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청렴신문고 QR코드

[붙임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 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제도는 모든 공사 현장에 적용하며, 공사현장에서 근

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노무비 전용통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 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약을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광역시 중학교 2. 작업명 : 별관동 외벽 페인트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W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5. 03. 05 ~ 2025.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계약후 실시)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